

헌법재판연구원 연구인력(일반임기제 4급) 채용 공고

헌법재판소의 연구·교육기관인 헌법재판연구원에서 아래와 같이 일반 임기제공무원을 공개 채용하고자 하니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.

2025년 9월 15일

헌법재판소사무처장

1

채용예정 직급 · 인원 및 담당업무

구 분	인 원	어 권	담당업무
일반임기제 서기관 (책임연구원)	1명	어권불문	○ 연구과제 기획 및 개발 ○ 연구사업 관리 및 평가 ○ 헌법·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과제 개발 및 중장기·비교법적 연구 ○ 외국 헌법재판기관의 사건 동향 및 실태 조사·분석 ○ 헌법재판과 관련된 국제규범 및 각국 입법례 연구·개발 ○ 헌법상 기본권 및 헌법재판의 심사기준 등에 대한 연구·개발 ○ 헌법재판소 판례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○ 주요 헌법적 쟁점 조사 및 연구 ○ 학술대회 등 기획 및 관리 등

가. 기본요건

○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

1. 피성년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
3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4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
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6의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- 나. 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
 - 다. 「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하여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- 가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면제된 날
 - 나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
 - 다. 벌금 이하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
 - 라.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
 - 마. 징계로 파면처분 또는 해임처분을 받은 날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
○ 18세 이상인 자(2007. 12. 31. 이전 출생자)

○ 남자의 경우 병역을 마쳤거나 면제된 자

나. 자격요건

채용직급	채용어권	자 격 요 건 (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)
일반임기제 서기관 (책임연구원)	어권불문	1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 4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2. 법률학에 관한 박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4년 이상, 석사학위 소지 후 관련분야 8년 이상 연구 또는 근무경력이 있는 자 3.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부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

- ※ 연구경력은 대학, 기타 연구기관에서 전임하여 연구한 경력을, 실무경력은 국가·공공기관·기타 산업체 등에서 전임하여 근무한 경력을 말함
- 관련분야 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)

다. 우대사항

- 연구기관에서의 연구경력이 있는 자
- 「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」 제3조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하는 자(원서접수 마감일 현재까지 유효하게 등록·결정되어 있어야 함)

가. 응시원서 접수

- 접수기간: 2025. 9. 15.(월) ~ 9. 25.(목) 18:00
- 접수방법: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(<http://recruit.ccourt.go.kr>)을 통한
온라인 접수
 - 방문·전자우편·등기 등 접수불가
- 원서접수 시 접수료(10,000원) 부과 ※ 수수료 별도
 - 마감일 18:00까지 접수료 결제 완료분에 한하여 접수함
- 접수 시 유의사항
 - 마감 직전에는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, 여유 있게 접수하여 주시기 바라며, 접수료는 원서접수 마감시간 내에 결제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.
 - 접수기간 종료 후에는 원서 수정 및 추가서류 제출이 불가합니다.

나. 전형일정

서류전형 합격자 발표	면접시험	면접시험 합격자 발표	임용예정일
2025. 10월 초순	2025. 10월 중순	2025. 10월 중순	2026. 1. 1. 이후

※ 각 시험단계별 합격자는 개별통지 및 재판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,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4

시험방법

가. 1차 시험: 서류전형

-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
- ※ 박사학위 소지자는 논문심사 병행

나. 2차 시험: 면접시험
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시험 실시
- 자질 및 발전 가능성, 전문성, 조직 적합성, 업무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- ※ 적격자가 없을 경우,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5

근무기간 및 보수수준

가. 근무기간: 임용일로부터 2년

- 총 5년의 범위 내(최초 근무기간을 포함)에서 근무기간 연장이 가능하며, 성과가 탁월한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추가 연장 가능

나. 보수는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자의 경력 및 자격 등을 고려하여 상한액과 하한액 사이에서 연봉이 책정되며, 연봉 외 급여(직급보조비, 정액급식비 등)는 별도 지급함

※ 공무원보수규정 [별표 33]

일반임기제공무원의 연봉한계액

(단위: 천원)

연봉등급	적용대상	상한액	하한액
4호	4급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		68,106

가. (필수) 자기소개서(양식 별첨) 1부

- ※ 지원동기, 성장과정, 주요경력 및 특기사항 등을 자세하게 작성함
- ※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홈페이지 '자료실'란에서 양식을 내려 받아 한글파일로 등록

나. (필수) 대학 및 대학원 졸업증명서, 학위수여증명서(해당자에 한함) 각 1부

- ※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(학위, 전공 등 정확히 기재)

다. (필수) 주민등록표 초본(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것) 1부

라. (해당자)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

- ※ 근무기간, 부서, 직위(직급), 담당업무, 근무형태(상근, 비상근(시간제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기재))를 정확히 기재하고, 발행기관의 관인 날인이 명확해야 함(발급 확인자 서명, 연락처 포함)

☞ 경력증명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미비할 시 불인정될 수 있음을 유의

- ※ 현직 공무원인 경우 인사약력카드(e-사람 출력물 등) 사본 1부 제출

마. (해당자) 자격증명서 1부

바. (해당자) 학위논문 및 주요 연구실적 목록(별지서식 제1호) 1부

대표 연구실적 요약문(별지서식 제2호) 각 1부

사. (해당자) 박사학위 논문 표지, 목차 및 국문초록 각 1부

아. (해당자) 외국어·정보화능력 등의 자격증 또는 성적표 사본 1부

- ※ 외국어 성적 제출 시 유효기간 내의 것만 인정

< 기 타 사 항 >

- ① 증빙서류가 제출되지 않은 경력, 학력, 자격사항 등은 일체 평가에 반영되지 않으므로, 자격요건과 관련된 증빙서류는 반드시 같이 제출하여야 함.
- ②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(학력, 경력증명서 등)는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
- ③ 상기의 서류는 각각 스캔하여 채용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접수시 각 '증빙 첨부란'에 등록 ☞ (다), (바), (사) 서류는 '첨부파일 등록' 단계에서 등록
- ④ 응시원서 상의 제출서류 미비, 기재 착오, 허위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함.
- ⑤ 경력기술서 등 기타 안내되지 않은 임의의 서류는 평가에 반영되지 않음
- ⑥ 모든 파일은 반드시 PDF 파일로 등록

- 가. 이력서 및 제출서류에 허위가 있을 때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.
- 나.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,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.
- 다. 최종합격이 되었더라도 채용신체검사,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- 라.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 등)의 경우, 반드시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- 마. 이력서에 E-mail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(기재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므로, 반드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)
- 바. 채용시험의 각 단계별 합격자는 헌법재판소 채용시스템 공지사항에 고지할 예정입니다.
- 사. 고용보험법 제10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본인 희망 시 임용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
- 아. 기타 문의사항은 헌법재판소 인사과(☎ 02-708-3512)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